

# 조선 태종은 왜 李茂를 죽였을까

남 지 대\*

- 
- |              |               |
|--------------|---------------|
| 1. 머리말       | 4. 죽인 까닭      |
| 2. 이무의 죄목    | 5. 죽음의 계기와 과정 |
| 3. 이무의 관직 경력 | 6. 맺음말        |
- 

초록: 태종은 병권에 오래 간여한 李茂(1355~1409.10.)를 외척 민무구 형제와 함께 정치세력을 형성할 만한 핵심으로 보아오다, 이지성 인사 건을 계기로 그를 죽였다. 이무는 정사·좌명 1등공신으로 우정승(1401.7.~03.4.)과 영승추부사(1403.7~05.1.)를 지내며 중군도총제를 겸하였고, 1407년 7월 다시 우정승이 되어 9월 世子朝見에 輔行하였다.

이무의 죄목은 1409년 10월 태종이 밝힌 국문할 내용으로, 충성을 믿을 수 없음과 난신 민무구 형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무와 행정 능력으로 오랫동안 병권에 간여했으나 충성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이무가 세자의 외삼촌 민무구 형제와 연결되었다 판단하여 죽인 셈이다. 1409년 5월 우정승 이무가 보고 없이 이지성의 관작을 올려준 것이 계기였다. 태종은 7월 초 이무를 우정승에서 파면했고, 7월 말 聽政하지 않겠다며 대신들에게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라 하여 그 잘못을 드러냈고, 8월의 禪位 선언 때 삼군진무소로 병권의 제도적 장악을 확인한 뒤 8월 말 王旨를 내려 의정부가 대간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였다. 고발이 없자, 태종은 9월 초 민무구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없애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재론하였다. 옥사가 번져서 9월 26일 대간이 이무의 죄를 6가지로 지적하였고, 27일 이무를 순금사에 내렸다. 10월 1일 태종이 이무의 잘못을 설명하여 대질하는 국문을 거쳐, 3일 창원부에 귀양보냈다가 5일 사람을 보내 쫓아가 죽주에서 죽였다.

제도를 개혁하여 大臣의 병권 간여를 통제하고 병권 장악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태종이 이무를 죽인 것은 자신에게만 충성을 오롯이 하지 않은 신하에 대한 본보이기 懲戒로 보인다. 의리를 표방하고 강제하는 조선의 왕권이 성립한 것이다.

핵심어 : 太宗, 李茂, 병권, 우정승, 공신, 외척, 閔無咎 형제

---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1. 머리말

유교적 세습 왕정에서 왕의 권위는 왕통 곧 왕위의 정통성에서 생겨난다. 필자는 태종의 왕위와 왕통에 허물이 있음을 전제하고,<sup>1)</sup> 태종의 즉위 명분과 왕통·왕권강화 등의 실상을 태종이 태조의 삼년상을 지내는 데까지 살펴보았다.<sup>2)</sup> 왕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 장치가 이미 갖추어진 유교 왕정체제에서 쿠데타로 즉위한, 태종은 즉위과정의 명분상 허물을 의식하며 자신의 왕통을 정당화하려 노력하였고, 태조 삼년상을 지냄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냈다.

명분의 허물은 평가의 준거가 되는 가치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태종이 이룩한 정당화는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음’ 정도였다. 쿠데타를 일으켜 새 왕조에서 정국을 주도하던 개국공신들을 죽이고 세자인 이복 아우를 죽이고 부왕 태조를 압박하여 선위하게 하였고,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한 뒤 다시 자신이 적장이라 내세워 즉위하게 하였던 형 정종을 압박하여 세자가 되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을 어쩔 수 없었던 일 이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려웠다.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 경험은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태종의 어쩔 수 없는 체험은, 왕통을 정당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 뒤에도, 태종으로 하여금 어느 신료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왕으로서 신료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은 왕위 및 왕위 승계의 불안을 낳았고, 그것은 왕권이 강화된 뒤 태종이 禪位 소동을 일으켜 처남[세자의 외삼촌] 閔無咎·無疾 형제를 죽이는 데로 나아가는 마음속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태종은 태조 삼년상이 끝날 무렵 민무구 형제를 죽이기에 앞서 李茂

- 
- 1) 崔承熙,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II.太宗朝의 王權과 國政運營體制, 지식산업사.
  - 2) 남지대, 2014 「조선 태종의 즉위과정과 내세운 명분」, 『역사와 담론』 69, 湖西史學會; 2013 「조선 태종의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 『한국문화』 63,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14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奎章閣』 45,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15 「조선 태종의 왕권 확립」, 『역사문화연구』 53,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2016 「태조 삼년상을 통한 태종 왕통의 완성」, 『奎章閣』 49, 奎章閣韓國學研究院.

(1355~1409.10.)를 죽였다.<sup>3)</sup> 이무는 태종의 定社·佐命 일등공신이며, 1407년(태종 7) 9월의 세자 朝見을 우정승으로 輔行하였다. 태종은 1408년 9월 초 태조의 장례를 지낸 뒤 10월 1일 교지를 내려 (1406년에 이미 확인한) 민무구 형제의 不忠을 선포했고, 태조의 大祥을 앞두고 1410년 3월 제주도에 정배되어 있던 민무구 형제를 自盡하도록 하여 죽였다. 민무구 형제를 죽인 것은 그들의 불충을 이미 교지로 선포하였기에, 설명해야 할 것은 죽임 자체 보다는 '왜 그때 죽였는가?'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무를 죽임'은 민무구 형제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

태종은 쿠데타를 도운 심복과 인척을 定社·佐命功臣으로 책봉하였다.<sup>4)</sup> 명분 없는 쿠데타의 성공은 공신책봉의 사적 경향으로 이어졌다. 쿠데타를 도운 공신의 사적 성격은 태종 왕권의 제도화와 공적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었고,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개혁 과정에서 인척의 공신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왕통 정당화와 제도개혁, 한양 還都 등으로 왕권이 강화되자, 태종은 1406년 8월 선위소동을 일으켜 장차의 왕위계승을 두고 민무구 형제 사건을 만들어냈고, 처남들을 죽이기 전에 왕권의 제도적 안정화의 장애로 판단한 공신 이무를 죽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무의 죽음을 먼저 실록에 나타난 이무의 죄목을 살펴보고, 그의 관력을 살펴본 다음, 태종이 이무를 죽인 까닭을 이무를 믿을 수 없었음과 이무가 병권에 오래 참여하였음 등으로 정리하고 죽음의 계기와 과정을 정리하려 한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다시 한번 이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가를 음미하고, 조선의 왕권으로서 태종의 왕권에 대한 약간의 추론을 보태려 한다. 이글에서 이무의 죽음을 개인사 중심으로 실록 자료에 의존하여 외척 민무구 형제의 죽음에만 연결 짓고, 태종 연간의 정치세력이나 태종이 신료를 평가한 준거 등과 함께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3) 金成俊, 1985 「朝鮮太宗의 外戚除去와 王權強化」,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256-58면. '4.閔氏兄弟의 獄으로 인한 政治波動'에서 閔無垢형제에 대한 李茂의 동정적 태도와 태종이 열거한 이무의 죄목을 중심으로 李茂의 죽음을 개관하고 있다.

4) 鄭杜熙, 1983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 23-56면.

## 2. 이무의 죄목

태종실록에 李茂의 죄목을 제시한 자료는 넷이다. 1) 1409년 9월 하순의 대간 上言, 2) 1409년 10월 1일 태종이 설명한 이무를 국문할 내용, 3) 10월 3일 이무를 죽이기를 거듭 청한 의정부의 소와 4)삼공신의 소이다. 3)과 4)는 2)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각주로 처리한다.

- 1) 1409년(태종 9) 9월 26일 대간의 上言에서 이무가 '난신 민무구·무질 형제와 무리를 지어 불충한 죄'로 지적한 6가지.<sup>5)</sup>
  - (1) 閔無疾의 尙將<sup>6)</sup>의 말을 듣고 바로 申聞하지 않은 것.
  - (2) (임금을 속여서) 이지성에게 加資·除職한 것.
  - (3) 민무질을 자원부처한 뒤에 그 처모에게 구원할 뜻을 일러준 것.
  - (4) (민무질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말해) 李彬이 민무질에게 무시로 왕래하여 굳게 교결하도록 한 것.
  - (5) 1407년 세자 朝見 때 (평양에서 外甥 尹穆과 이야기하며) 민무질을 아들 같이 본다면 안타까운 뜻을 드러낸 것.
  - (6) 1408년 여름 (이빈과 더불어) 민무질은 지금 비록 流貶되었으나 두텁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
- 2) 1409년 10월 1일 태종이 군신에게 설명한 이무를 국문할 행적 3가지.<sup>7)</sup>
  - (1) 1398년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등의 모의를 태종에게 밀고하였으나) 가운데 서서 사태를 관망하였다는 것.

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을미(26일) (전략) 大司憲李文和右司諫朴翊等上言 (중략) 上覽之曰 此疏曲盡 奸惡昭然, (중략) 嚴其守直以待.

6) 尙將에 대해서는 김윤주, 2011 『조선 태조~태종대의 정치와 정치세력』, 서울시립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76-181면; 2014, 「조선 초기 국왕 친인척의 정치 참여와 '君親無將'의 원칙」, 『郷土서울』 87. 참고, 將은 '장래의 亂逆을 말하였음'을 뜻한다. 春秋公羊傳 莊公 32년의 '公子牙今將爾 辭曷爲與親弑者同 君親無將 將而誅焉'에서 온 것이다. 史記 권 99, 劉敬·孫叔通傳에 '人臣無將 將即反 罪死無赦'로 나오는데, 裴駰이 集解하기를 '將은 亂逆을 이른다'고 하였다[『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4책 521면].

7)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기해삭 上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중략). 又召無疾, 質以上不悅之言, 茂垂首莫能對, 遂還下茂于巡禁司.



- (2) 1402년 태종의 종기가 오래갔을 때 민씨 4형제, 辛克禮와 민씨 집에 모였는데 어린아이를 세우려는 꾀를 냈다는 것.
- (3) 1407년 세자 朝覲을 輔行하도록 했을 때 민씨 집에 가서 임금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돌아와서는 ‘세자를 가르치라’고 말한 것.

3) 1409년 10월 3일 의정부의 疏에서 지목한 아홉가지이고,<sup>8)</sup> 같은 날 4) 三功臣의 疏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이다.<sup>9)</sup>

이를 태종이 제시한 죄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태종이 지적한 것은 셋이나 둘로 묶을 수 있다. ①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에 중간에 서서 관망하는 두 마음의

- 8)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신축(3일) (전략) 政府疏曰(후략). 죄목을 간추리면, (1)겉으로는 민무구 등을 미워하는 것같이 하여 國人과 더불어 함께 죄를 청하고, 마음속으로는 비호하여 하늘을 가리켜 맹세한 것. (2)무인년(1398년)에 왕래하며 反間을 행하여 승부를 보아 거취를 결정하려 하였고, 태종에게 나온 뒤에는 일이 균색하고 형세가 약한 것을 보고 또 다시 거짓 피곤하다고 하고 물러가 있다가, 그 형세가 떨치기를 기다려서 다시 왔으니, 이랬다저랬다 하여 믿기 어려운 것이 심함. (3)1402년에 태종이 종기가 나서 오래 끄는 것을 엿보고, 閔氏와 더불어 가만히 私第에 모여 어린아이를 옹립하려고 꾀한 것. (4)世子 朝覲 때 이무가 민무질과 말하기를, ‘전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째서 나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는가?’ 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불충한 마음으로 임금의 마음을 망령되게 헤아린 것. (5)사행에서 돌아와 또 태종을 뵈고, 世子の 잘못을 망령되게 말하여 國本을 동요시키려고 하였음. (6)민무질이 이무의 집에 가서 스스로 편안할 계책을 묻기를, ‘전하가 반드시 우리들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니, 장차 어찌하랴?’ 하였는데, 이무가 이를 숨기고 오래 발설하지 않기를 몇 년이 지나 그 말이 발설된 연후에야, 그 아내를 시켜 閔氏의 집에 가서 거짓말로 安城君[이숙번]이 잘못 전하였다고 해명함. (7)李之誠이 朝覲하러 갈 적에 한 말은 이무가 사주한 것이라 생각됨[이지성은 이무의 문객이며, 이무가 資級을 띄어 벼슬을 주었음]. (8)항상 그 黨과 더불어 宗支를 없애기를 꾀하여, 王子 宗室을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말이 尹穆에게서 먼저 나오게 하였음. (9)자기를 불쫓지 않는 자를 없애버리려 하면, 柳沂를 사주하여 다른 사람을 빌려서 上書하거나, 혹은 盧閉을 시켜 인연하여 하소연하였음.
- 9) 상동. (이어서) 三功臣疏曰(후략). 죄목을 간추리면, (1)李茂는 안으로 奸險을 품고 헤아릴 수 없게 뒤집어서, 태종이 定社할 즈음에 中立을 지키며, 사태를 엿봄. (2)1402년 태종이 명령할 때에 후일 權勢를 오로지할 꾀를 도모하고자 가만히 閔氏의 집에 가서 비밀히 큰 계책을 의논함. (3)1407년 世子를 모시고 조현하라는 명을 받고, 閔氏의 집에 가서 도리어 태종을 원망하는 심정으로 無咎에게 말함. (4)민무구·무질이 不忠으로 죄를 얻어 외방에 쫓겨났는데, 몰래 姻親을 시켜 왕래하며 말을 통해 不軌의 黨에 아부함. (5)朝覲에서 돌아와 태종을 뵈고, 가만히 世子를 譴訴하여 또 國本을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려 하였음.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고, ② 민씨 형제와 더불어 어린 세자를 세우려 하였고 세자의 지위를 흔들려 하였다는 것이다. 9월 말 대간의 주장은 난신 민무구 형제와 결당하여 불충한 죄를 6가지로 지적한 것이기에 모두 ②에 해당한다. 10월 초 정부가 지적한 9가지 죄목에서 (2)는 ①과 같고, 나머지는 모두 ②에 해당하며, 삼공신이 지적한 5가지 죄목에서 (1)은 ①과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무의 죄목은 태종이 이무를 국문하기 위해 신료들에게 설명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무가 지니고 있던 두 마음의 조짐이 민무구 형제의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무의 죄는 태종의 판단이 결정하였다.

이무를 죽이는 뿌리가 된 민무구 형제의 불충은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자고 말한 것인데, 태종은 이를 곧 今將의 마음으로 보았다. 세자의 외삼촌 민무구 형제가 1406년 禪位 소동에서 그 불충[今將의 마음]이 드러나, 태종은 1408년 10월 1일 교서로 선포하였다. 태종이 세자에게 전위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것은 1406년(태종 6) 8월이었다.<sup>10)</sup> 실록에 재이가 자주 보이는 까닭에 태종이 세자에 전위하려고 몰래 閔霽 河崙 趙英茂 李叔蕃에게 고하였는데, 모두 불가하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뒤 민무구 형제가 今將의 마음을 품고 세자 외의 왕자들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하여, 개국·정사·좌명 三功臣의 탄핵을 받아 민무구·무질이 자원안치된 것은 1407년 7월이었다.<sup>11)</sup> 1408년 5월 하순에 태조가 죽어, 9월 9일에 건원릉에 장사하고, 21일 태조의 졸곡제를 지냈다.<sup>12)</sup> 한편 9월 15일에 태종의 장인 閔霽[민무구 형제의 부]가 죽었다.<sup>13)</sup> 9월 24일 명 사신이 와서 27일 賜祭, 28일 賜賻, 29일 賜諡를 행하였다.<sup>14)</sup> 10월 1일(을해)에 태종이 민무구 형제를 외방으로 내치면서 교서를 내려 그 죄를 낱낱이 들었는데, 둘째 죄목 今將의 마음에 이

10) 이때의 선위소동은 남지대, 2014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奎章閣』 45, 43-51면 참고.

1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계해(12일) 臺諫交章上言 人臣無將 將而必誅, 萬世之通義也. 竊聞驪江君閔無咎, 驪城君閔無疾. 鷲山君辛克禮等 內懷不忠而有今將之心, 三功臣請罪不即兪允, 有乖大義, 臣等舛望.(후략) ○命閔無咎閔無疾辛克禮自願安置.

12) 남지대, 2016 「태조 삼년상을 통한 태종 왕통의 완성」, 『奎章閣』 49, 428-30면.

1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경신(15일) 驪興府院君閔霽卒.

14) 남지대, 위의 논문, 431-32면.

무가 관련되어 있었다.<sup>15)</sup> 10월은 태종의 장인 민제가 죽은 바로 다음 달이다. 그 첫 날에 교서를 내린 데에서 태종은 민무구 형제의 불충을 그 처벌을 미룰 수 없는 죄로 보았음이 드러난다. 불충에 대한 벌은 사형이다.

### 3. 이무의 관직 경력

이무는 문과 급제가 확인되지 않으며, 가문의 내력도 실록에서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무의 관직 경력을 그의 무와 행정 능력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이무의 관직 경력을 『고려사』 『고려사절요』와 조선왕조실록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무는 1355년 생으로 태종 보다 열두 살이 많았다. 이무는 1382년(우왕 8) 4월 西海道按廉使로 처음 보이고,<sup>16)</sup> 1384년 8월에 鷹揚軍上護軍이었으며,<sup>17)</sup> 1388년 요동정벌군에 좌군(도통사 조민수)에서 서경도원수 沈德符 아래의 부원수였다.<sup>18)</sup> 창왕 즉위 후 1388년 11월 간관이 이인임의 무리라고 탄핵하여 유배될 때 이무는 知密直司事였다.<sup>19)</sup> 이무는 1390년(공양왕 2) 4월 회군공신에 녹훈되었고,<sup>20)</sup> 8월 이무는 전라도 도절제사로서 왜구를 물리쳤다.<sup>21)</sup> 1392년 5월 사헌부에서 정몽주의 당여를 탄핵할 때, 이무는 파직, 遠流되었다.<sup>22)</sup>

1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을해(1일) 下敎書. 敎曰 (중략) 故茲敎示 想宜知悉. 一. (중략) 一. 無疾在松京之時 至右政丞李茂家, 問計曰 今上終必不肯保全我輩, 我輩將若之何? 此非今將之心乎? 一. (후략)

16) 『고려사』 「열전」 47. 禍王 8년 4월 西海道按廉使 李茂 獻所獲禾尺三十餘人 (후략)

17) 『고려사』 권81, 「병지」(우왕) 十年 八月 鷹揚軍上護軍李茂上言 (후략)

18) 『고려사』 「열전」 50. 우왕 14년 4월 丙辰. 加崔瑩八道都統使, 以昌城府院君曹敏修爲左軍都統使, 以西京都元帥沈德符, 副元帥李茂.(후략)

19) 『고려사』 「열전」 50. 우왕 14년(창왕 즉위) 11월 諫官上疏 劾知密直李茂·李彬 曰 (중략) 乃流茂于谷州 (후략)

20) 『고려사』 「세가」 45. 공양왕 2년 4월 壬寅 錄回軍諸臣功. 下敎曰 (중략) 前密直司事李茂·李彬 (중략) 等四十五人 皆賜功臣 (후략)

21) 『고려사』 「세가」 45. 공양왕 2년 8월 기사 倭寇全羅道 都節制使李茂擊却之 (후략)

이미 樞臣의 반열에 올랐던 이무는, 조선 건국 후 1392년 10월 개국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sup>23)</sup> 1393년(태조 2) 2월 開城尹이 되었고,<sup>24)</sup> 중추원사 이무는 4월 서강의 군선을 점검하여 왜구에 대비하였고, 5월 강화 병선을 점검하여 연해 요로에서 왜구를 잡았으며,<sup>25)</sup> 8월에 경상도에 나가 병사를 점고했다.<sup>26)</sup> 1394년 8월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와,<sup>27)</sup> 1395년 4월 관중추원사가 되었고, 8월에 전라도 도관찰출척사가 되었다.<sup>28)</sup> 1396년 12월 일본의 일기도와 대마도를 정벌할 때, 전라도관찰사 이무는 도체찰사로서 五道兵馬都統處置使 김사형[우정승]을 도왔다.<sup>29)</sup> 1397년 9월 말 태조가 세자빈을 책봉할 때 참찬문하 이무와 중추원학사 鄭擢으로 하여금 冊印을 내리도록 하였다.<sup>30)</sup> 1398년 6월 노비변정도감의 제조로 보이고,<sup>31)</sup> 8월 사헌부에서 陣圖를 익히지 않았다고 여러 왕자 등을 탄핵할 때 참찬문하부사 이무도 탄핵받아, 파직되었다.<sup>32)</sup>

조선 개국 초에 개성윤으로 도읍의 행정을 맡은 것은 이무가 행정능력이 뛰어났음을 방증한다. 서강과 강화의 병선을 점검하여 왜구에 대비하고 경상도에 나가

- 
- 22) 『고려사』 「세가」 46. 공양왕 4년 5월 丁酉(17일) 司憲府兼大司憲閔開等上疏 (후략).
- 23)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10월 丁巳(9일) (전략) 前同知密直司事李茂 (중략) 自予爲將帥時, 久在麾下, 服勞捍禦, 不避艱險, 其勞可惜. (후략)
- 24)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2월 丙戌(11일) [政目] 都興·李茂 開城尹
- 25)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4월 경자(26일) 命中樞院使李茂, 點檢西江軍船, 以備倭寇. ○5월 8일 壬子 命中樞院使李茂, 點考江華兵船, 至泊沿海要路捕倭.
- 26)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8월 甲戌朔 遣開城尹李茂 于慶尙道, (중략) 點兵.
- 27)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8월 을해(8일) 遣開城尹李茂, 謝許通道路 ○권 7, 태조 4년 1월 정유(2일) 謝恩使李茂 (중략) 回自京師.
- 28)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경인(27일) 以李茂判中樞院事 ○권 8, 8월 을해(14일) 以李茂爲全羅道都觀察黜陟使
- 29)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정해(3일) 以門下右政丞金士衡爲五道兵馬都統處置使, (중략) 前都觀察使李茂爲都體察使, 聚五道兵船 擊一歧·對馬島. (후략)
- 30)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9월 丙子(27일) 上具公服坐正殿, 封沈氏爲王世子賢嬪, 命參贊門下李茂·中樞院學士鄭擢 賜冊印.
- 31)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6월 기미(15일) (전략) 仍敎提調南在·李茂·韓尙敬等曰 (후략)
- 32)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甲辰朔 命憲司 問諸王子及宜城君南闡·參贊門下府事李茂·上大將軍等 不習陣圖之故. ○8월 임자(9일) 大司憲 (중략) 李茂 罷職 (후략)

병사를 접고한 데에서, 이무의 군사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 도관찰출척사와 참찬문하부사를 지냈고, 또 개국 초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가 노비변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무의 노비변정도감 제조 역임은 행정능력을 방증한다. 이렇게 이무는 조선 개국 후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재추로서 그 활동 범위가 군사를 넘어 외교와 행정일반으로 더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관직이 참찬문하부사에 머문 것은 그가 정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李茂는 1398년 8월 정도전·남은 등의 정보를 靖安君[芳遠]에게 알려준 공으로 9월 定社功臣 1등에 녹훈되었고,<sup>33)</sup> (公侯伯을 봉작할 때) 이무는 參贊門下府事 判禮曹事 義興三軍府左軍節制使가 되었다.<sup>34)</sup> 1399년(정종 원) 10월에 이무가 李居易 趙英茂와 함께 정종의 內相으로 보이며,<sup>35)</sup> 조례상정도감을 둘 때 이무는 정안공[태종] 趙浚 金士衡 李居易 등과 함께 判事가 되었다.<sup>36)</sup>

1400년(정종 2) 1월 말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정안공[태종]이 하윤·이무 등과 더불어 應變策을 밀의했다.<sup>37)</sup> 이후 이무는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지고 정종 세자[태종]와 사적인 자리도 잦아졌다.<sup>38)</sup> 4월 태종이 세자로서 사병을 혁파하고 즉위할 기반을 다졌을 때,<sup>39)</sup> 이무는 典兵者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록의 기사에 나오지

---

33)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己丑(17일) 上與我殿下論第定社功臣. (중략) 義安公和, 益安公芳毅, 懷安公芳幹, 殿下諱, 上黨候李伯卿, 左政丞趙浚, 右政丞金士衡, 參贊門下府事李茂·趙璞, 政堂文學河崙, 參贊門下李居易, 參知門下趙英茂, 奮忠決策 定難反正 載安宗社功勞重大 永世難忘. (후략)

34)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계유(1일) (전략) 李茂參贊門下府事·判禮曹事·義興三軍府左軍節制使

35) 『정종실록』 권2, 정종 원년 10월 갑진(8일) 除太上殿侍衛 (중략). 上召諸公侯及內相李居易, 李茂, 趙英茂 曰 (후략)

36) 『정종실록』 권2, 정종 원년 10월 계축(17일) 置條例詳定都監, 分爲三房. 以靖安公及左政丞趙浚, 右政丞金士衡, 參贊門下府事李茂·李居易, 大司憲全伯英, 中樞院副使柳觀爲判事 (후략)

37)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1월 갑오(28일) (전략) 是夜 靖安公與河崙, 李茂等 密議應變之策.

38)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기해(2일) (전략) 上之宥浚, 因居易·李茂之論救也. ○3월 기사(4일) 畋于多也帖 (후략) ○권4, 정종 2년 5월 을축(1일) 御壽昌宮後苑清心亭 觀擲石戲. (후략)

않으나 이거이 李佇 부자를 견제 비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5월 초 이 저와 갈등으로 이무가 자원하여 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영흥부윤으로 나갔기 때문이다.<sup>41)</sup> 1400년 7월 초 태조가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무를 강릉부에, 조영무를 곡산부에 유배하였다.<sup>42)</sup> 이날 省·憲·刑曹가 上言하여 이무 조영무 등을 소환할 것을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가,<sup>43)</sup> 좌정승 성석린과 우정승 민제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태조에게 나아가 해명하고 청원하여 경외중편되었다.<sup>44)</sup> 9월 이무는 판삼군부사로 서용되었다.<sup>45)</sup> 1400년 11월 정종이 (세자=태종에게) 선위할 때 판삼군부사 李茂에게 교서를 받들고, 도승지 朴錫命에게 국보를 받들고 仁壽府에 나아가 올리도록 하였다.<sup>46)</sup> 1401년(태종 원) 정월 이무는 佐命 1등공신이 되었고,<sup>47)</sup> 丹山伯에 봉해졌다 丹山君으로 개정되었다.<sup>48)</sup>

1401년 7월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와 사간원을 분립시키는 관제개혁 직후의

- 
- 39) 崔承熙, 1994 「개국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37-8면.
- 40)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정해(28일) [전략] 於是 判義興三軍府事李茂等 復于上曰 居易父子吝釋兵權 志不可測. 且目臣等曰 一塊肉耳. 不可不早慮也. 上亦惡之, 遂出居易爲雞林府尹 佇爲完山府尹 李茂爲永興府尹. (후략)
- 41)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5월 임신(8일) [政目] [전략] 貶李居易領雞林府尹, 李佇領完山府尹, 以李茂 爲東北面都巡問察理使兼永興府尹.(후략)
- 42)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7월 을축(2일) 世子朝德壽宮, 以告上尊號也.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 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 于谷山府. 是日 世子朝德壽宮, 太上王復謂世子曰(중략) 世子還告于上, 上不得已流之.
- 43) 상동. 省憲刑曹上言 請召還李茂·趙英茂等, 不允. (후략)
- 44) 상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閔霽 率文武百官 詣太上殿.(후략) ○命李居易, 李茂, 趙英茂, 趙溫京外從便.
- 45)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9월 기사(8일) [政目] [전략] 李茂判三軍府事.(후략) ○置酒于後苑涼廳, 慰判門下李居易·上黨侯李佇·判三軍李茂·門下侍郎趙英茂也.(후략)
- 46)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1월 신미(11일) 上禪位于王世子. 判三軍府事李茂奉教書, 都承旨朴錫命奉國寶, 詣仁壽府上焉.(후략)
- 47)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정월 을해(15일) 錄佐命功臣爲四等. 教曰 (중략) 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郎贊成事趙英茂·左軍摠制李叔蕃·中軍摠制閔無咎·左軍同知摠制辛克禮·驪城君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戡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후략)
- 48)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정월 을유(25일) 革公侯伯之號 (중략) 丹山伯李茂 改爲丹山君.

인사에서 이무는 47세로 右政丞이 되었다.<sup>49)</sup> 1402년 12월말 이무는 우정승으로서 李天祐 趙英茂와 함께 중군도총제를 겸하였다.<sup>50)</sup> 1403년 4월 초 이무는 우정승에서 해임되어 丹山府院君 겸 중군도총제가 되었고,<sup>51)</sup> 7월 영승추부사가 되었다.<sup>52)</sup> 1405년 4월 丹山府院君 이무는 무과의 會試監校官으로 同監校官 趙涓과 함께 黃象 등 28인을 뽑았다.<sup>53)</sup> 1407년 7월 이무는 다시 우정승이 되었고,<sup>54)</sup> 9월 세자[ = 進表使]가 하정사로 朝見하는데 進箋使로 輔行하였다가,<sup>55)</sup> 1408년 4월 초에 돌아왔다.<sup>56)</sup>

#### 4. 죽인 까닭<sup>57)</sup>

##### 1) 믿을 수 없음

태종이 이무를 죽인 근본적 이유는 믿지 못함으로 판단된다. 태종이 이무를 믿

---

49)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7월 경자(13일)  
 5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병자(27일) 以右政丞李茂·完山君李天祐·判承樞府事趙英茂皆兼中軍都摠制, (후략)  
 51)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4월 경술(4일) 以成石璘爲右政丞, (중략) 李茂 丹山府院君兼中軍都摠制, (후략)  
 52)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7월 신묘(16일) 以趙浚爲領議政府事, 李居易領司平府事, 李茂領承樞府事, (후략)  
 53)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4월 무인(13일) 以丹山府院君 李茂爲武科會試監校官, 右軍都摠制趙涓爲同監校官, 取黃象等二十八人.  
 54)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을묘(4일) 河崙·趙英茂罷. 以義安大君和領議政府事, 成石璘左政丞, 李茂右政丞, (후략)  
 55)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9월 을해(25일) 遣世子禔如京師, 賀正也. 以世子爲進表使, 完山君 李天祐副之; 右政丞李茂爲進箋使, 雞城君 李來副之. (후략)  
 56)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4월 경진(2일)  
 57) 자료는 『태종실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실록 편찬 책임자들은 태종과 공범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태종실록』의 태종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태종이, 차마 죽일 수 없는, 宗親 姻戚이나 공신을 죽인 경우는 그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이상의 짓을 한 것으로 정리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 못한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만 오롯이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일 것이다. 불충 또는 두 마음은 1409년 10월 1일 이무를 국문할 때 태종이 가장 먼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의 일로써 지적한 점이며,<sup>58)</sup> 바로 1400년(정종 2) 7월 태조가 무인년(1398년) 사태 때 이무가 왔다갔다하며 反問하고 가운데 서서 사태를 관망하며 이긴 자를 따르려 하였다고 사태를 관망하는 不忠한 사람으로 문 제 삼았던 것이다.<sup>59)</sup>

이무는 원래 아무 편도 아니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武·吏의 능력과 좋은 품체를 바탕으로 한, 태조가 지적하였듯이, 이긴 자의 편이었다. 이무는 身彩가 좋았다.<sup>60)</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군사적 능력과 함께 행정 수완도 있었기에, 정몽주의 무리로 탄핵받아 파직·유배되었으나 태조 초에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였다. 위화도 회군 후에 이인임의 무리라고 공격받았으나 회군공신이 되었고, 1392년 5월에 정몽주의 남은 무리로 탄핵받아 파직되었으나 조선왕조의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으며,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 때에는 靖安君[태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도 태조로부터 본디 정도전 남은 등과 좋았는데 중간에 서서 사태를 살피다 승자를 따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그의 성격 탓으로 볼 수 있고, 무와 행정을 겸한 능력의 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무의 이러한 면은 태조의 표현으로 이긴 자를 따르려 하는 ‘사태를 살펴보는 불충한 사람[觀變不忠之人]’<sup>61)</sup>이었고, 태종은 ‘가운데 서서 사태를 살펴보는 둘을 품은 마음[中立觀變 懷二之心]’<sup>62)</sup>이라고 하였다. 신료의 불충이 조짐으로라도 확인

58)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기해삭 上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 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중략) 茂之中立觀變 懷二之心 兆於此矣. (후략)

59) 주 42)와 같음.

60)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기해(1일) (전략) 有一二人曰茂有何功乎? 予以其身彩可觀. 遂不聽. 于後亦無顯顯大過 遂至政丞. ○권 19, 태종 10년 3월 경진(14일) (전략) 趙瑠謂其妻曰 李茂政丞 身彩甚美 可爲王. ○권 20, 태종 10년 7월 기사(4일) <李茂가 왕 되는 꿈을 발설한 사건>

61) 주 42)와 같음.

62) 주 58)과 같음.



되면, 유교 왕정에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반란을 말로만 한 將을 처벌하는 春秋公羊傳의 의리는 이를 강조한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 필요할 때에 그 신료의 능력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왕권이 강화되어 제도적으로 안정된 뒤에는 어느 왕이라도 (비록 말만 한 경우라도) 확인된 불충을 안고 가며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태종은 ‘장차의 반역을 말한 것도 반역을 실제로 행한 것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춘추공양전 今將의 의리’를 왕의 자리에서 내세우고 활용하여, 집정대신이 인사권이나 좌주문생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抑止하고 세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형성도 미연에 차단하려 하였던 것이다.

## 2) 병권을 오래 잡음

李茂는 태조 초부터 죽임을 당한 해까지 오랜 동안 병권에 간여하였다. 1409년 10월 초 이무를 죽이기를 청하는 대간의 상소에서 “민무질은 戚里이고 이무는 대신인데, 모두 오랫동안 병권을 잡고 있어 사람들이 복종하는 바 되었”<sup>63)</sup>다고 하였다. 이를 몇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서 보았듯이 이무는 1398년 8월 초 陣圖를 익히지 않았다고 탄핵받아 참찬문하부사에서 파직되었다. 이 진도 훈련은 사병을 혁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sup>64)</sup> 이무를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을 보면 그의 군사적 영향력이 작지 않았음을 방증한다.<sup>65)</sup> 이후 8월 하순에 이무는 제1차 왕자의 난에 정도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담하여 定社 1등공신이 되었다. 정종 때에는 內相을 지냈으나, 1399년 11월에 군사를 거느리는 중친과 훈신의 수를 줄였을 때,<sup>66)</sup> 이무는 典兵者에 들지 못하

63)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신축(3일) 流李茂于昌原府. (중략) 臺諫疏曰 (중략) 今使亂臣惡黨雜處州郡. 夫無戚里也 李茂大臣也, 皆久執兵權 爲人所服. (후략)

64) 崔承熙, 위의 책, 36-43면.

65) 『태조실록』[태조 7년 8월 갑진(1일)]에 南閫과 李茂 2인이 거명되었는데 둘이 逆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잘못을 드러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8월 9일(임자) 기사에는 柳曼殊 鄭臣義등 原從功臣은 (죄를) 논의할 만하지 않다 면서도 원종공신인 李茂는 거명하여 파직하였다.

였다. 1400년(정종 2) 1월 말 제2차 왕자의 난 때 정안공[태종]이 하운 이무 등과 더불어 應變策을 밀의한 이후 이무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정종 세자[태종]와 사적인 자리도 잦아졌다. 1400년 7월 초 태조가 ‘사태를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으로 지적하여 유배되었다 풀려난 뒤, 9월에 관삼군부사가 되었다.

태종은 즉위한 뒤 이무의 건의를 받아들여 別侍衛를 두었다.<sup>67)</sup> 1401년(태종 원) 정월에 이무는 佐命 1등공신이 되었고, 관삼군부사로 尙瑞司의 判事를 겸하여 무반 인사에 간여함으로써 분경금지의 대상이 되었으며,<sup>68)</sup> 7월 이무는 47세로 右政丞이 되어 무반의 인사를 장악하였다.<sup>69)</sup> 이제 이무가 관제를 개혁하여 만든 의정부의 첫 우정승으로서 서반의 최고 실력자가 된 것이다. 1402년 6월 삼군에 도총제 등을 두어 10사를 삼군에 분속하였는데,<sup>70)</sup> 9월 초에 병조의 청에 따라 (승추부는 전대로 이조에서 맡고) 삼군의 도총제 총제의 정안까지 병조에서 맡게 하였다.<sup>71)</sup> 이에 9월 중순 이무는 정승으로 變理하지 못하여 천변을 불렀다고 사직하였는데,<sup>72)</sup> 이무가 거듭 사직하자 태종은 다시 우정승으로 제수하였다.<sup>73)</sup> 이것은 병조의 권한 확대를 계기로 신임을 묻는 이무에 대하여 태종이 다시 그 신임을 확인한 것이겠다. 이무는 1402년 12월 말 중군도총제를 겸하였고, 1403년 4월 초까지 우정승에 있었으며, 해임되어 단산부원군이 되면서도 중군도총제를 겸하였다. 우정승 해임은 이무의 정치적 잘못이 아니라 誥命의 사은사로 가는 성석린을 집정대신인

66) 『정종실록』 권2, 정종 원년 11월 정묘 命宗親及勳臣分典諸道兵. 靖安公江原道及東北面 (중략) 其餘典兵者皆罷.

67)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2월 기유(19일) 初置別侍衛

68)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6월 신사(24일) 罷知義興三軍府事金英烈職. 英烈犯禁奔競 於兼判尙瑞司事李茂家, 憲司劾而罷之. ○권 2, 태종 원년 7월 무신(21일) 上將軍朴淳罷. (후략)

69)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7월 경자(13일)

70)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계해(11일) 置三軍都摠制以下官. 每一軍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 以十司分屬之, 皆謂之甲士. (후략)

71)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무자(8일) 兵曹請三軍都摠制摠制政案, 許本曹掌之. (후략)

72)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신묘(11일), 계사(13일), 정유(17일) 李茂復上箋辭 上覽箋曰 政丞非老疾 固請辭職 何也? 平壤君趙浚以病免, 晋山君河崙以謗辭, 將以何人代之乎?

73)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경자(20일) 復以李茂爲右政丞. (후략).

우정승으로 제수하기 위해서였다.<sup>74)</sup>

왕권이 안정되어 가면서 태종은 병권에 간여하는 이무를 제도개혁으로 견제하였다. 1403년 6월 말 관제를 고치고 찬성사 이하를 다시 임명할 때,<sup>75)</sup> 삼군의 각 군에 도총제부를 두어 삼군이 승추부에 직속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뒤 7월에 이무는 領承樞府事가 되었다. 이것은 우정승을 지낸 이무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인 견제라 볼 수 있겠다. 1405년(태종 5) 정월 개혁으로 병조가 2품아문으로 승격하여 승추부를 병합하였고, 또 3월 속아문제의 시행으로 삼군 등이 병조의 속아문이 되었다. 이로써 태종은 병조를 통하여 병권을 장악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4월 무과를 시행할 때 이무는 會試監校官으로 黃象 등 28인을 뽑았다. 아직 좌주문생의 관행이 있었기에 무과 회시의 감교관이 되었다는 것은 이무가 무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계기로 보인다. 이것은 태종이 정치세력을 형성할 계기가 되는 좌주문생관계를 싫어하여 무과의 시관을 없앤 데서 짐작할 수 있다.<sup>76)</sup> 태종은 이 무렵 이무를 제도개혁으로 견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무는 1407년(태종 7) 7월 초 다시 우정승이 되었다. 1406년 8월 태종은 선위 소동으로 민무구 형제의 '今將'[불충]을 이미 확인하였고,<sup>77)</sup> 1407년 6월 말에 심한 가뭄으로 태종이 4죄를 告天한 바로 뒤였으며,<sup>78)</sup> 7월 중순에는 민무구 형제를 자원 안치하였으며,<sup>79)</sup> 9월에 있을 세자의 朝見이 논의되던 때였다.<sup>80)</sup> 태종은 이무가 민무구 형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미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세자 조현에 輔臣으로 보내기 위해 우정승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74) 상동. 寡右政丞成石璘, 承樞府提學李原, 藝文館提學李廷堅于新樓. 石璘等將如京師 餞之也.

75)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乙亥(29일) 汰冗官改官制. 議政府贊成事以下 在內諸君 三軍摠制 京中各司 外方守令 皆改下 (후략)

76)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병진(19일) (중략) 上曰 予將親試射御也. 予之不以宰相爲試員者, 惡其稱爲座主門生也. 李之誠被重罪 李茂爲座主薦用, 是其驗也.(중략) 命曰 (중략) 罷試官.

77) 남지대, 2014 앞의 논문, 41-51면.

78) 남지대, 위의 논문, 51-58면.

79)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계해(12일) 命閔無咎閔無疾辛克禮自願安置.

80) 남지대, 위의 논문, 58-61면.

이무의 사행 중에, 태종은 제도를 고쳐 우정승과 이무의 영향력에 대비하였다. 태종은 1407년 10월 內上直을 內禁衛로 고쳤고,<sup>81)</sup> 12월 삼군의 兼摠制를 없애고 처음으로 十司에 兼上護軍을 두었고, 좌우정승이 이조·병조의 판사를 겸하여 동반·서반의 인사권을 장악하던 것을 없앴다.<sup>82)</sup> 또, 삼군 10사의 일을 자세히 정하고 병조-10사/겸상호군처의 통속체계를 정하였다.<sup>83)</sup> 이듬해(1408년) 정월 의정부의 서무를 육조로 옮긴 뒤에, 2월 초 다시 좌우정승으로 이조·병조의 판사를 겸하도록 하였다.<sup>84)</sup> 2월에 영삼군사[=趙英茂]의 체통 예도를 정하여, 병조에서 군령을 장악하여 삼군도총제부와 10사에 行移하면 삼군호군·십사진무·각도절제사씩장이 영삼군사처에 나아가 告課하여 시행토록 하였다.<sup>85)</sup> 이러한 조처는 이무에 대한 태종의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죽음의 계기와 과정

태종이 이무를 죽이는 사건의 뿌리는 세자의 외삼촌 민무구 형제에 닿아있다. 민씨 형제가 今將의 마음을 품었고 세자 외의 왕자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무를 죽인 사건은 먼저 ‘태종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앞 죄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09년 10월 1일 이무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태종이 1398년 왕자의 난 때부터 모아두었던 것을 한꺼번에 내놓은 것이다.<sup>86)</sup>

8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0월 신축(21일) 改內上直 爲內禁衛.

82)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2월 정해(8일) 初置十司兼上護軍, 罷各軍兼摠制.(후략) ○左政丞成石璘 解兼判吏曹, 右政丞李茂 解兼判兵曹. (후략)

83)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2월 신축(22일) 詳定三軍十司事宜.

8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2월 계미(4일) 復以左政丞成石璘兼判吏曹事, 右政丞李茂兼判兵曹事, (중략). 舊制, 左右政丞 兼判吏兵曹 掌銓選. (후략)

85)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2월 경인(11일) [政目]. 갑진(25일) 命禮曹 詳定領三軍事體統禮度.

## 1) 계기

1408년 9월 초 태조를 健元陵에 장례지낸 뒤, 9월 22일(정묘) 우정승 이무가 질환으로 사직하였다.<sup>87)</sup> 사정은 우정승 이무가 몰래 사인 李明德을 시켜 집의 李灌에게 이르기를 (태종의 장인 민제가 죽어서, 유배되었던) “민무구·무질이 서울에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효심은 하나이다. 아마 주상께 보고하면 가까운 때 대간을 나와 일보도록 명할 것 같다. 그 거동 진퇴를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나아가 일을 보면 삼가서 각박하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관이 사인 이명덕이 천기를 누설하고 또 대간의 진퇴를 지휘하여 엮어두려 하니 부당하다며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기를 청하자 태종이 상소를 안에 두고, 지신사 黃禧를 이무 집에 보내어 “이 일은 애들 놀이에 가깝다. 피험하지 말고 일을 보라.” 하였다. 비록 태종이 애들 놀이 같다며 지나갔으나, 이 사건은 태종이 이무를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408년 10월 1일 태종이 내린 민무구 형제의 죄를 낱낱이 든 교서의 둘째 죄목인 今將의 마음에 이무가 관련되어 있다.<sup>88)</sup> 내용은 閔無疾이 松京에 있을 때 이무 집에 가서 태종이 끝내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책을 물었는데, 태종은 그것을 今將의 마음으로 보았다. 또 10월 5일(기묘) 형조가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上言에서 위 교서에 근거하여 1402년 태종이 종기가 났을 때 사사로이 모여 幼沖을 꺾 꺾 내었고 민무질은 정승 이무 집에 가서 계책을 물었다고 하였다.<sup>89)</sup> 11월에

86) 주 7)과 같음.

8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정묘(22일) 右政丞李茂以疾辭. 初 茂密使舍人李明德 謂執義李灌曰 今無咎無疾到京, 子之於父 孝心一也. 似聞主上從近命臺諫出仕, 其舉動進退 不可輕易. 若出視事 則慎勿刻迫. 灌既出視事, 上書曰 臣之辭職在家也, 舍人李明德漏洩天機, 且綢繆指揮臺諫之進退, 實爲不當. 乞收職牒 鞫問情由. 疏留中不下. 遣知申事黃喜于茂第 傳旨曰 此事近於兒戲 毋避嫌 視事.(후략)

88) 주 15)와 같음.

8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기묘(5일) 刑曹請無咎等罪. 上言曰 敎書條畫內, 壬午年上發腫之時 曾無救療之心, 私自聚會 謀挾幼沖, 無疾至政丞李茂家間計, 且欲剪除宗支, 又指揮諫官造言, 以累上德等事 最爲不軌, 不可不懲. (후략)

태종은 10사의 겸상호군을 없애고 다시 삼군에 掌軍總制를 두었고, 또 삼군에 經歷都事를 두었다.<sup>90)</sup> 11월 중순에 牙牌法을 논의 결정할 때에 이무는 논의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91)</sup> 그런데, 1409년 윤4월 태종이 (대사헌 때의 일로 귀양 가 있는, 이무의 사돈) 孟思誠을 외방종편하도록 하였다.<sup>92)</sup> 이무는 사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비[맹사성]가 죄인이 된 탓에 출입하지 못한다 하여 태종이 특별히 용서하였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태종의 이무를 죽여야 한다는 마음이 확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1409년(태종 9) 5월 말 사헌부가 李之誠 인사 건으로 병조를 탄핵한 것이다.<sup>93)</sup> 사헌부에서 이지성[하윤의 妻姪]의 갑작스런 승진 등으로 병조의 죄를 청하며 우정승 이무 등 인사라인을 탄핵하고, 서리를 보내 守直하였다. 상소에서 이무 등이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지성의 관직을 올려준 것을 '權을 훔쳐 무리를 심은 죄' '악에 무리 짓고奸에 들붙음'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악과 간은 민씨 형제를 가리킨다. 태종은 '상소가 옳다'면서도 탄핵당한 이들을 출사하도록 하였다. 이튿날[6월 1일] 사헌부에서 예궐하여 우정승 이무 등의 죄를 청하니, 태종은 관련자가 모두 훈친대신이어서 아래 관원만 벌줄 수 없다며 수직을 풀도록 명하였다.<sup>94)</sup> 이때도 태종은 말한 바는 참으로 옳다 하였

9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갑인(10일) 罷十司兼上護軍 復置三軍掌軍總制, 中軍五員 左右軍各四員, 又置三軍經歷都事. (총제명단 생략)

9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계해(19일) 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領三軍府事 趙英茂 吉昌君權近 安城君李叔蕃 兵曹判書南在 議牙牌之法.

9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기유(7일) 命孟思誠外方從便. 上曰 政丞李茂唯一婿, 以父爲罪人 故未得出入, 今特有之. 茂詣闕謝.

9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신축(30일) 司憲府請兵曹之罪. 憲府劾右政丞李茂, 兵曹判書李天祐, 漢平君趙湄, 左代言李槩 遣吏守直. 上疏曰 臣等竊以 惟辟作福 惟辟作威, 臣無有作福作威 則爵賞刑威 人主之大權, 不可下移者也. 臣而敢有作福作威 以及私昵者, 法司當以罪請 以絕朋黨之源, 人主當以義制 以謹堅氷之戒. 此臣等所以敢冒天威 仰瀆聰明者也. (중략) 之誠爲人雖賢且智 苟不稟殿下而爵之 猶不免竊權植黨之罪, 況此黨惡而附奸也哉! 誠王法所不赦者也. (후략)

9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임인삭 司憲府詣闕 請右政丞李茂等罪, 上使黃喜宣傳曰 所言固是, 然坐此者 皆勳親大臣也. 上旣蒙宥 則下官不可獨罰. 命除守直.

다. 그날 의정부에서 이지성의 죄를 청하였고,<sup>95)</sup> 2일 사헌부에서 민무구 무질의 죄를 청하였으며, 이지성은 직첩을 거두고 먼 곳에 부처하였다.<sup>96)</sup> 4일(을사)에 태종은 이무 이천우 조연 등에게 일을 보도록 명하였다.<sup>97)</sup>

6월 내내 민무구 형제의 죄 다스리기를 청하는 가운데,<sup>98)</sup> (6월 9일) 태종은 이무를 대신하게 할 (귀양 가 있는) 李居易를 불러올리려다 그만두었고, 內侍衛를 3번으로 새로 설치하고, 호종하는 법을 다시 정하였다.<sup>99)</sup> 6월 15일에는 태종이 광연루에서 하운 성석린 이무 조영무 柳亮을 불러서 좌우를 물리치고 민무구의 일을 말하였는데, “公義나 私恩의 한 쪽을 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100)</sup> 사은의 대상인 외척 민무구에 대하여 ‘공의를 폐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곧 살려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이무에게도 죽음의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태종은 1409년 7월 초 이무를 파면하여 단산부원군을 삼았다.<sup>101)</sup> 이무가 마땅히

9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임인삭 議政府請李之誠罪. (후략)

96)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계묘(2일) 司憲府大司憲柳亮等 請閱無咎無疾罪. ○命收李之誠職牒 遠方付處. 河崙,成石璘,黃居正等詣闕啓曰 (중략) 上曰 予姑思之 卿等其退. 乃有是命.

97)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을사(4일) 命李茂,李天祐,趙涓,李槩 視事. ○병오(5일) 立西班考前職乃署考[告]身之法.

98)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기유(8일) 司憲府大司憲柳亮等 請無咎無疾之罪. ○임자(11일) 司憲府又上疏請無咎無疾之罪. ○계축(12일) 司諫院右司諫大夫權遇等 請閱無咎無疾,李居易,李之誠,趙順和等罪. ○갑인(13일) 議政府 司憲府 司諫院上疏請無咎,無疾等罪. ○병진(15일) 議政府率百官上疏 請無咎,無疾等罪.- 是以功臣宰輔臺諫百官 上疏請罪, 亦至數年而不已, 誓不俱生. ○柳亮等詣闕復請無咎等之罪. ○柳亮等上言曰 無咎無疾不忠之罪. ○신유(20일) 議政府率百官詣闕 請無咎無疾之罪. ○下教求言. ○권18, 태종 9년 7월 을해(5일) 命柳亮權遇等視事. ○정축(7일) 右司諫大夫權遇等 上疏請無咎無疾之罪, 上不覽疏. 翼日 遇等復請.

9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庚戌(9일) 召李居易于鎭州, 既而止之. ○初置內侍衛三番. ○命兵曹判書李天祐 更定扈從之法.

100)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병진(15일) 御廣延樓 召河崙,成石璘,李茂,趙英茂,柳亮 屏左右言無咎之事, 以謂公義私恩不可偏廢.

10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기묘(9일) 罷李茂 爲丹山府院君. 以李舒爲右政丞. (중략) 茂自知當罷 上書乞辭, 未及啓而罷相之批已下矣.

파면될 줄 알고 글을 올려 사직하였다는 데에서 태종이 이무를 파면하기 위해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7월 말 청정하지 않겠다, 8월 초의 세자에게 선위하겠다는 두 번의 소동도 이무를 죽이려는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며, 8월 말 의정부에 내린 王旨도 그러하다.

먼저, 1409년 7월 말 ‘청정하지 않겠다’는 소동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7월 27일 태종은 의정부사인을 불러 (재이로 修省하려 하니) “무릇 크고 작은 공사를 내게 아뢰지 말고 정부에서 처결하라. 자단할 수 없는 큰 일 같으면 세자에게 들어서 행하라.”고 명하였다.<sup>102)</sup> 수성을 핑계로 청정하지 않겠다는 태종의 억지는 뒤집어 읽으면, 작은 일이라도 왕의 재결이 없으면 아무리 대신이라 하더라도 시행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은 곧 이무 등이 아뢰지 않고 이지성의 품계와 관직을 올려준 것의 부당함을 다시 드러내어 강조한 것이겠다. 이것을 밝게 아는 대신 공신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이 소동은 세자에게 문소전의 8월 삭제를 집행하도록 명하면서 끝났다.<sup>103)</sup> 다음, 8월 선위 소동은 10일에 태종이 서연관을 경연관으로 인사하였는데, 세자에게 선위하려는 것이라 하였다.<sup>104)</sup> 태종의 선위의지는 실록에 드러나 있으나, 역시 신료의 반대로 13일에 철회하였다.<sup>105)</sup> 7월 말의 청

102)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정유(27일) 命議政府裁決庶務. 召議政府舍人申概曰 (중략) 然予欲恐懼修省, 凡大小公事 勿啓于我 政府處決. 若大事不可自斷 聽於世子而行. 於是 河崙, 成石璘, 李舒, 李茂, 趙英茂等 詣闕請曰 (중략) 況人臣而不稟命於君上 此逆亂之尤. 臣等豈有處決之理乎? 上托以疾, 石璘等固請不得.

103)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기해(29일) 百官功臣 咸進闕庭, 耆老宰樞安翊等十餘人亦與焉. ○8월 庚子朔 命世子禔 攝行朔祭于文昭殿. 是日 命令始出 猶不坐殿聽政.

104)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기유(10일) (중략) 趙英茂右政丞領三軍事, 柳亮參贊議政府事兼司憲府大司憲, 尹柢吏曹判書, 李貴齡兵曹判書, 李衍左軍都摠制, 黃喜參知議政府事, 金漢老光山君, 安騰知申事. 以世子賓客清城君鄭擢, 西川君韓尙敬, 雞城君李來, 檢校判漢城府事趙庸 改爲經筵官, 又以藝文館提學卞季良爲同知經筵事. 蓋欲禪位世子也. 日晚 河崙, 李茂詣闕 黃喜迎謂之曰 今日之批 正爲內禪也. 因言上旨曰 (중략) 吾欲內禪 自丙戌迨于今已再三矣. 今則吾計已決 雖宰相累請 斷不聽從.

10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경술(11일) 領議政府事李舒, 左政丞成石璘等 領百官上疏. ○신해(12일) 李舒河崙成石璘等 率百官咸入闕庭, 請面陳大計, 上不許. ○司諫院右司諫大夫權邁, 司憲執義崔鑄等 詣闕上疏. ○임자(13일) 李舒成石璘河崙李茂趙英茂李叔蕃柳亮等



정암음이 8월 문소전의 삭제로 풀린 데에서 보면, 이때도 문소전의 추석제로 풀릴 것임을 신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료들은 더욱 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선위 선언을 통하여 태종이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태종은 1409년 8월 11일에 삼군진무소를 두고, 李天祐를 도진무, 朴自靑을 상진무, 沈龜齡을 부진무로 삼았다.<sup>106)</sup> 이를 10일 인사에서 조영무를 우정승·영삼군사로 삼은 것과 연결하면, 병권에서 이무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없애려는 제도개편과 인사로 이해된다. 이것은 민무질과 이무가 병권을 오래 장악하여 사람들이 복종하는 바 되었다는 지적에서 방증된다.<sup>107)</sup>

이제 병권과 관련하여 이무를 죽여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제도의 확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것은 8월 27일 태종이 의정부에 내린 王旨에서 읽을 수 있다. 내용은 뜻을 얻지 못한 무리들이 말을 만들어 왕래하여 君臣을 이간하고 종실 장상을 엮어 빠뜨리니, 의정부가 대간으로 하여금 들은 바에 따라 숨김없이 진달하게 하면 (태종이) 종실 공신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겠으니 언로를 넓히려는 것이었다.<sup>108)</sup> 한마디로 이제 준비가 다되었으니 고발하라는 선언이다.

## 2) 과정

고발이 태종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9월 초 태종은 다시 민무

詣闕. ○李叔蕃面陳禪位之非, 且請日視朝政. 上曰 予豈厭萬機哉. (후략)

106)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경술(11일) 置三軍鎮撫所. 時兵曹摠軍政 上欲於傳位之後, 親掌軍政 乃曰 兵曹皆以儒臣充選 不宜於指畫軍事. (후략) ○8월 정묘(28일) 改三軍鎮撫所爲義興府, 秩二品 置兼判事, 知事, 同知事各一人. 三品以下 依舊稱鎮撫.

107) 주 63)과 같음.

108)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병인(27일) 下王旨于議政府. (중략) 今者 不逞之徒 或憑國家利害 或挾一身愛惡 造言往來, 以爲阿附之階 仕進之徑, 間我君臣 構我宗室將相 其爲國家之禍, 將有不可勝言者矣. 興言至此 予實痛心. 議政府 統百官施號令 以輔寡人之治. 其令臺諫 體予至懷 輒隨所聞 陳達無隱, 則雖宗室功臣 事關宗社 當以法論 已載盟書, 予不敢宥. 其有爲宗社計者 或直來親告 或實封以聞, 以廣言路 以幸宗社.

구 형제의 일을 끄집어냈다. 여기서부터 옥사로 번져 10월 초에 이무를 죽였고, 중순에 민무구 형제는 제주도에서 안치되었다. 그 대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9월 4일 태종이 편전에서 李天祐 등을 불러 말하기를 (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고, 몇 아들을 민무구 등이 해치려 하여 병술(1406년)에 왕위를 사양하여 피하려 하였는데 臣子에 막혀 이루지 못하였더니, 민무구의 성냄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하였다.<sup>109)</sup> 또 태종이 (좌대언) 金汝知에게, 지금 민씨의 무리는 내가 참언을 듣는다지만 왕의 아들은 오직 장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죽여야 하는가 하였다.<sup>110)</sup>

9월 8일(정축) 민무구 형제를 동정하고 태종을 비판한 尹穆과 鄭安止를 巡禁司에 내려 대간 형조에 함께 국문하라 명하였다.<sup>111)</sup> 윤목(이무의 外甥) 정안지가 이지승과 함께 赴京하였는데, 그때 민무구 형제를 동정하고 그들이 공신으로 보전하기 어렵다고 말한 때문이었다. 12일 윤목이 끌어들이 趙希閔을 순금사에 내렸다가 풀어주었다.<sup>112)</sup> 의정부가 예궐하여 윤목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고, 이천우가 용서해서는 아니 됨을 힘써 말하여 다시 신문하게 되었다.<sup>113)</sup> 19일 호조판서 李彬과 조희민을 순금사에 가두었고, 전라병사 姜思德 등을 잡아왔다.<sup>114)</sup> 윤목의 말이 또 이무와 강사덕 등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무가 예궐하여 옥에 나아가 밝히기를 청하였으나 태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sup>115)</sup> 태종이 南在 李膺 등을 불러 내전에서 이빈을 刑問한 말을 묻고, 이빈이 굳이 따르지 않았다 하자 대질하기 위해

109)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계유(4일) 御便殿 召李天祐, 金漢老, 李膺, 黃喜, 趙庸, 金科等 謂之曰 (중략) 太祖譴責於予 夫豈非哉! 予自以爲既不得於親, 予有數子 無咎等又欲害之, 故於丙戌歲 欲辭位以避之, 但爲臣子所沮 故不獲焉, 無咎怒形于色. (후략)

110) 상동. (전략) (上)謂汝知曰 今閔氏之黨 謂予聽讒, 然人君之子 唯留長子 餘皆盡殺之可乎?

11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정축(8일) 下原平君尹穆, 漢城少尹鄭安止于巡禁司.

112)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신사(12일) 囚平江君趙希閔, 繕工監朴剛生于巡禁司, 既而釋之. 穆辭引二人也.

113) 상동. (중략) 臺諫又伏閣乞允議政府之請, 乃命臺諫刑曹同巡禁司 更訊穆之同謀者.

114)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무자(19일) 囚戶曹判書李彬, 平江君趙希閔于巡禁司. 遣人捕全羅道兵馬都節制使姜思德, 前摠制金瞻以來.

115) 상동. 李茂詣闕言 穆雖族姪 嘗有私憾, 請就獄自明. 命還于第.

삼척에서 민무질을 불러왔다.<sup>116)</sup>

이렇게 이빈에게서 이무가 한 말이 나오고, 윤목이 이무를 끌어들여서 민무구 형제가 ‘적장 외의 왕자를 모두 없애자고 말한 것’이 李茂에게 미치게 되었다. 9월 23일 옥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순금사의 府官·委官을 다시 임명하였다.<sup>117)</sup> 앞의 죄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6일 대간이 난신[민무구 형제]과 결당하여 불충한 이무의 죄를 6가지로 논하였다.<sup>118)</sup> 요컨대, 이무는 겉으로는 백관과 더불어 민무구 등의 죄를 함께 청하고 안으로는 몰래 친속을 시켜 서로 수호하였다는 것이다. 태종은 상소를 보고 奸惡이 밝게 드러났다고 하고, (간헐 사람이 많으니) 守直을 엄히 하여 기다리라고 하였다가, 27일 단산부원군 이무를 순금사에 내렸다.<sup>119)</sup>

태종이 지적한 이무의 죄목은 앞의 죄목 부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10월 1일 태종이 정전에 앉아 의정부·삼공신을 불러 이무의 죄를 의논하였다.<sup>120)</sup> 이무를 불러서 進善門 밖에 두고, 태종은 여러 신료에게 ①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무가 가운데서 변화를 살펴 두 마음의 조짐이 있었음, ② 1402년 태종이 종기가 심했을 때 민씨 4형제와 신극례가 민씨 집에 모여 어린 아이를 세우려 논의한 피가 이무에게서 나왔음, ③ 1407년 세자 朝見 직전에 이무가 민씨 집에 가서 민무질에게 임금의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돌아와서는 뱃기를 청해 세자를 가르치라고 말한 것을 설명하고, 李原 黃居正 黃喜와 지신사 安騰이 함께 가서 따지도록 하였다. 이무가 해명하려 하자, 민무질을 불러서 ‘임금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등을 대질한 뒤에 이무를 순금사에 다시 돌려보냈다.

10월 2일 순금사에서 이무 등 6인이 수종을 나누지 아니하고 능지처사에 합당

116) 상동. 召閱無疾于三陟. 以李彬言本不與無疾相交, 欲令質正也.

117)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23일 壬辰 (중략[政目]) 上謂貴齡等曰 予不以前等府官爲非 而代以卿等. 大抵訊問者衆 則公正情狀著現矣. 又召陸進恭曰 三省與郎廳依舊, 明日早 請府官訊問, 前等府官不無遲緩. 蓋慮大獄久滯 而難於得情也.

118) 주 5)와 같음.

119)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9월 병신(27일) 下丹山府院君李茂 于巡禁司. ○정유(28일) 囚刑曹判書柳龍生, 前都節制使具成亮, 巡禁司司直具宗秀于巡禁司.

120) 주 7)과 같음.

하다 하니, 태종은 윤목 등 5인을 한 등급 낮추어 장 100, 유 3,000리에 재산을 몰 관하도록 하였다.<sup>121)</sup> 이날(2일) 이무의 아들들도 정배하였고, 민무질은 다시 삼척으로 돌려보냈다.<sup>122)</sup> 10월 3일 태종은 이무를 창원부에 유배하고, 정부·삼공신·대간의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up>123)</sup> 10월 4일 의정부 대간이 궐에 나와 다시 이무의 죄를 청하였고,<sup>124)</sup> 5일 논란 끝에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자 태종이 받아들여, 사람을 보내 쫓아가 竹州에서 李茂를 죽였다.<sup>125)</sup> 태종이 의정부와 공신 대간이 말이 각기 다름이 있어 처치하기 어렵다고 하자, 다시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민무구 형제와 연결된 이무 등의 죄를 청하였고, 태종은 이를 받아들여서 이무를 죽였던 것이다. 이때 민무구 형제는 제주도로

- 
- 12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경자(2일) 杖流尹穆·李彬·姜思德·趙希閔·柳沂于遠地. 巡禁司上獄辭 (중략) 右茂等六人 私相圖議 謀危社稷 不分首從 當凌遲處死. 上曰 穆等五人 減死罪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財產沒官. (후략)
- 122) 상동. ○杖流柳龍生,具成亮等于遠地. (중략) 流茂之子衍于蔚州, 承祚長鬢, 公柔沃溝, 公孝豐州, 公祗淸州, 托平海, 唯公裕以盲免. (중략) 閔無疾復歸于三陟郡.
- 123)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신축(3일) 流李茂于昌原府 巡禁司司直禹導押行. (중략) 議政府臺諫亦上疏請. 政府疏曰 (이무의 죄를 6가지로 나열) (중략) 明正典刑 肆諸市朝 (중략) ○三功臣疏曰 (이무의 죄를 5가지로 나열) (중략) 請依法司所申 俱置於法 以垂萬世亂臣之戒. ○臺諫疏曰 (중략) 今無咎無疾不忠之罪 春秋以來所未有之大惡. 政府臺諫大小臣僚交章請罪 至于累十, 孟子所謂國人皆曰可殺者也. (중략) 夫無疾戚里也 李茂大臣也, 皆久執兵權 爲人所服. 儻或一夫唱亂 四方蜂起 則其爲國家之患, 可勝言哉! (중략) 舉春秋之大義 從律文以斷罪, 國家幸甚 公道幸甚, 皆不允. (후략)
- 124)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임인(4일) 議政府臺諫詣闕復請李茂罪. 三功臣又上疏曰 (중략) 上命中官 毋得出外將命, 以是內外不通. 至日晚, 上曰 予有眼疾 未能斷事, 予當更思, 乃皆退.
- 12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계묘(5일) 遣人誅李茂. 黎明 召功臣掌務(중략) 宣問曰 請無疾等罪 誰是發言? 尙敬曰 功臣完議而請 (중략). 右司諫朴習·掌令閔審言等繼而至而請, 上曰 政府功臣臺諫 言各有異 處之難矣. 俄而 議政府率百官上疏曰 (중략) 無咎等之罪 自頒教以來 愚夫愚婦 亦曉然知其爲不忠 罔不痛憤. (중략) 明正典刑 肆諸市朝, 不勝幸甚. 上曰 吾當酌量. (중략) 上乃取百官之疏, 判曰 依申. 無咎·無疾 姑於海外遠島付處, 其餘尹穆等勿復舉論. 於是 議政府白遣巡禁司大護軍睦進恭, 刑曹正郎梁允寬 追李茂于路次監刑, 無咎無疾移配濟州, 睦進恭等追及茂于竹州, 宣傳曰 爾之罪惡 當戮及妻孥, 特免爾子 使之各全首領. 茂叩頭而謝. 遂梟其首. 茂妻與女 籍沒爲婢. (후략)

옳기라 하였다.

태종은 먼저 불충은 말로만 한 경우라도 죽여야 한다는 춘추공양전의 의리를 제시 표방하였으나, 대간 삼공신의 탄핵과 親鞫을 거치고 백관을 거느린 의정부의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갖추어서 정사·좌명 일등공신이며 우정승을 지낸 이무를 죽였던 것이다.

## 6. 맺음말

이무(1355~1409.10.)의 죄목과 죽인 까닭, 죽이는 계기와 과정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무의 죄목은 1409년 9월 말~10월 초에 대간, 태종, 의정부, 삼공신이 지적하였는데, 핵심은 10월 1일 태종이 신료들 앞에서 밝힌 이무를 국문할 내용이다. 간추리면 태종이 왕으로서 이무의 충성을 믿을 수 없음과 그가 尙將의 마음으로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자고 말한 민무구 형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삼공신 의정부 대간이 여러 가지로 제시한 죄목은 태종의 뜻을 읽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이무를 죽인 이유는 무와 행정 능력은 있는데 충성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는 이무가 병권을 오래 잡고 있으면서 금장이 드러난 세자의 외삼촌 민무구 형제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죽이는 계기는 1409년 5월 이무가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지성의 품계와 관직을 올려준 것이었다. 1409년 7월 초 이무를 우정승에서 파면한 뒤, 7월 말 태종은 청정하지 않겠다며 '대신들에게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라'하여 이무의 잘못을 드러내 강조하였고, 8월의 선위선언 때는 삼군진무소를 두어 병권의 제도적 장악을 확인한 뒤, 8월 말 왕지를 내려 의정부가 대간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였다. 고발이 없자, 태종은 9월 초 민무구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없애려 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하였고, 윤목 등의 옥사가 번져서 9월 26일 대간이 이무의 죄를 6가지로 지적하는데 이르러 27일 이무를 순금사에 하옥하였다. 10월 1일 태종이 신료들에

게 이무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질하는 국문을 거쳐, 3일 창원부에 귀양 보냈다가 5일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올린 상소를 받아들이는 모양을 갖추어 사람을 보내 쫓아가 죽주에서 이무를 죽였다. 태종은 외척 민무질과 함께 오랫동안 병권을 간여·장악한 이무를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으로 보아오다가, 그것이 이지성 인사 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종은 이무를 죽여야만 했을까? 문제가 병권 간여에 있었다면, 이무의 관직을 빼앗아 병권에서 소외시키면 되었을 것이다. 정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문제였다면, 이무를 멀리 귀양보내면 되었을 것이다. 세자로 있을 때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장악한, 태종은 즉위 초부터 (병권에 날카롭게 주의하면서) 왕권의 강화와 제도적 안정을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왕조의 제도적 기틀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한마디로 고려 말 이후 재상 중심의 틀을 태종이 병권을 장악하고 제도개혁을 통하여 왕 중심의 의정부-육조-각사의 틀로 바꾸었다. 태종의 왕권 안정 노력을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병권의 맥락에서 이무와 관련을 중심으로 다시 개괄하며, 태종은 이무를 죽여야만 했을까를 음미해 보겠다.

왕권 아래의 병권은 재상의 發命權[軍令], 摠制/護軍의 掌兵權, 병조의 군사행정권, 무반의 인사권 등으로 구성된다. 조선 개국 초에는 무반의 인사권을 우정승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무는 1401년(태종 원) 7월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와 사간원을 분리한 개혁 때 우정승이 되었다. 이때 의흥삼군부를 승추부로 고쳐 軍機와 왕명 출납이 통합되었는데 좌우정승이 판승추부사를 겸하였고, 이무는 우정승으로서 중군도총제를 겸하였다. 태종은 의정부의 첫 우정승으로 정사·좌명 1등공신 이무를 택하였고 그에게 軍機[軍令]를 맡는 승추부의 판사와 掌兵權을 통할하는 중군도총제를 겸하게 하였다. 이 무렵 이무는 태종이 병권의 맥락에서 가장 신임하였거나 적어도 가장 신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1403년 무렵 태종은 비록 제도를 바꾸는 등 견제는 하였으나 이무에게 군령과 장병의 면에서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었다. 1403년 4월 (사은사를 집정 대신으로 파견하기 위해) 우의정에서 해임되고도 이무는 계속 중군도총제를 겸하

였다. 6월에 관제를 고치고 거의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하였는데 삼군에 각기 도총제부를 두어 삼군을 승추부에 딸리지 않게 한 뒤에야, 7월 이무는 영승추부사가 되었다. 1405년 태종은 제도를 개혁하여 우정승[재상]을 견제하였다. 1405년 정월 육조를 2품아문으로 승격하는 관제 개혁 때, 승추부를 병조에 합쳐 병조가 군령·군정을 총괄하고 우정승의 겸판사를 없애 무반의 인사권도 병조에서 장악하였다. 3월 속아문제 시행으로 삼군과 10사 등이 병조의 속아문이 되었다. 병권의 군령, 군사행정, 무반 인사권을 병조에 모은 것으로, 지금까지 우정승[재상]의 권한을 병조판서에게 옮긴 것이다. 그런데 우정승의 병조 겸판사는 곧 복구되었다. 우정승이, 한편으로 왕에게 직계할 수 있는 병조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판사를 겸하여 병조를 장악하는 태조 이래의 틀은 껍질이나마 존속하였다. 그해 4월 무과 실행 때 단산부원군 이무는 會試監校官이 되어 28인을 뽑았다. 감교관은 태종이 고려 이래의 좌주-문생을 꺼려 試官이 좌주가 되지 않게 하려고 바꾼 칭호였다. 우정승의 권한을 병조판서로 옮기고 좌주문생의 폐해를 우려하여 칭호를 바꾸었으나, 태종은 제도개혁으로 견제하면서도 이때까지 이무를 병권의 맥락에서 아직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406년 8월 선위소동 후 민무구 형제가 今將의 마음을 품고 세자 외의 왕자들은 없애자고 말했다는 것이 태종의 말을 통해 드러났고, 1407년 7월 三功臣의 탄핵을 받아 민무구·무질이 자원안치되었다. 태종이 밝힌 민무구 등의 죄목 今將의 마음에 이무가 연관되어 있었기에, 이때쯤에는 태종이 이무의 충성을 믿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7월 초 이무는 다시 우정승이 되어, 9월 세자 朝見에 輔臣으로 갔다가 이듬해 1408년 4월에 돌아왔다. 사행 중에 태종은 살펴본 바와 같이 내금위로 시위를 보강하고 병조의 병권 집중을 걱정하여 영삼군사처를 두어 군령을 확인하고 용병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sup>126)</sup> 이는 우정승 이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종이 이미 이무를 믿지 못하고 그를 의식하며 미리 제도를 고쳐, 세자 보행으로 커질 수 있는 우정승 이무의 영향력에 대비한 것이겠다.

126)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276면.

이후 이무는 죽을 때까지 (비록 국상중이었으나) 죽음의 계기로 판단되는 사건 외에 우정승으로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1408년 태조 장례 후 10월 1일 민무구 형제의 죄를 낱낱이 든 교서를 내린 뒤, 11월 牙牌의 범을 정할 때는 이무는 의논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409년 5월 이무의 이지성 인사 건 이후, 6월에 內侍衛를 두었고, 8월 전위 소동 중에 삼군진무소를 두었다[곧 의흥부로 개칭]. 이 개혁으로 태종은 군령과 군사행정을 나누어 군령은 의흥부[-삼군도총제부-십사]가 맡고 군정은 병조가 맡게 하고, 병조에 의흥부의 군사장악에 대한 감독권을 주었다.<sup>127)</sup> 이제 이무가 우정승으로 병권에 간여할 가능성은 겸판병조사로서의 인사부분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좌우정승의 인사권은 이미 이조·병조판서와 知申事·좌승지의 제도적 견제를 받았고, 필요한 경우 태종이 都目政에 친림하여 통제할 수도 있었다.

다시 음미한 바와 같이, 태종은 우정승 이무를 죽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제도적 대비를 하였음에도 죽인 셈이 된다. 태종은 단계적 제도개혁으로 大臣의 병권 간여를 견제·통제하고 대신이 병권 장악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종은 왜 이무를 죽였을까? 남는 것은 결국 의리의 문제다. 요컨대, 태종이 이무를 죽인 것은 의리[명분]의 문제로, 태종이 왕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자신에게만 충성을 오롯하게 하지 않은 공신에게 춘추공양전의 의리[將이 없는 충성]를 내세워 懲戒한 것으로 보인다.

추론하자면 이무를 죽인 것은, 쿠데타로 즉위한 뒤 명분상의 허물을 의식하며, 태종이 공신과 외척을 견제하고 제도개혁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1409년 10월에 이르러 춘추공양전의 의리를 자신의 사적 기반이던 공신·외척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왕권을 성립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려와 다른 ‘조선의 왕권’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의 왕권’을 정치제도와 명분[의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왕권은 제도의 측면에서는 고려 말 이래의 사병과 도평의사사의 행정장악

127) 민현구, 위의 책, 277면.



을 바탕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틀과 관행을 몇 차례에 걸친 개혁으로 다음과 같이 고친 제도를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사병을 없애고, 왕이 公兵을 제도로 장악하여 병권을 제어하였다. 태종은 육조-속아문[각사]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을 장악하여 왕권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왕 중심의 틀을 갖추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왕은 주요 정치안건을 의정부·육조 대신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관행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명분[의리]의 면에서는, 태종이 태조 삼년상을 지냄으로써 즉위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왕통을 태조-태종으로 확인하였다. 1409년 10월에 이르러 태종은 즉위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신의 사적 기반이던 핵심 공신과 외척에게 춘추공양전의 將없는 충성 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사·좌명 1등공신 이무를 尙將이 드러난 외척 민무구 형제와 연결되었다는 불충을 내세우며 의정부가 거느린 백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갖추어서 죽이는 데 이른 것이다. 조금 강조하면, 개국한 지 20년이 다되어서야, '조선의 왕권'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제도와 신료의 공적 충성을 요구하는 의리 위에 자리를 굳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런데 충성해야 하는 공의 준거는 민과 국이다. 왕정에서 민과 국은 왕이 대표하는데, 문제는 왕이 세습되며 왕위가 왕통으로 완결된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에서 왕을 향한 신료의 공적 충성이 민과 국을 위하는 데에 준거해야 함을 제도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신료를 의리[충성]로 규범·재단하며 '조선의 왕권'으로 성립한, 태종 왕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태종이 즉위하며 내세운 畏天勤民[敬天勤民]의 실제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경연, 대간 언론, 사관 등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불편함이 제기된다.

논문투고일(2017. 5. 2), 심사일(2017. 5. 18), 게재확정일(2017. 6. 5)

## 참고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 金成俊, 1985 「朝鮮太宗의 外戚除去와 王權強化」,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 김윤주, 2009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韓國史學報』 35, 고려사학회.
- \_\_\_\_\_, 2011 『조선 태조~태종대의 정치와 정치세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 「조선 초기 국왕 친인척의 정치 참여와 ‘君親無將’의 원칙」, 『鄉土서울』 8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남지대, 2014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奎章閣』 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 2016 「태조 삼년상을 통한 태종 왕통의 완성」, 『奎章閣』 4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류주희, 2000 『朝鮮 太宗代 政治勢力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 오종록, 2005 「정치세력의 변동과 조선 건국」,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해안.
- 鄭杜熙, 1983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
- 崔承熙, 1994 「개국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Abstract**

## Why did King Taejong order the assassination of Yi Mu?

Nam, Jidae

King Taejong of the Choseon dynasty, who had usurped the throne through a coup d'etat, was ever vigilant lest he lose control of the dynastic military power or independent political forces grow around some political leaders. In this connection he kept a close watch on Yi Mu (1355~Oct. 1409), who had long been concerned with military affairs, as one of the most likely prospects for such a leadership, along with Min Mu-gu and his brothers. When it was revealed that Yi had abused his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Taejong seized an opportunity to have him murdered. Yi Mu had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first grade “‘Jeong-sa’ and Jwa-myong’ Merit Subjects.” And he had served as a vice-premier and also as the head of the Privy Council, while holding the post of one of the supreme commanders in the army simultaneously. At the apogee of his official career, for instance, he was appointed vice-premier on July 1407, and two months later he accompanied the then Crown Prince of the Choseon dynasty on his trip to China, the purpose of which was to do homage to the Chinese emperor.

Accusations against Yi Mu made by Taejong were largely two-fold: first, his allegiance to him was suspect; second, he had close ties to the rebellious Min Mu-gu and his brothers who were maternal uncles of the Crown Prince. Those two factors combine to render Yi, in the eyes of Taejong, guilty enough to deserve death penalty. The turning-point of Yi's lot was his decision to raise Yi Ji-seong's government office and court rank on May 1409 without the throne's approval. On early July 1409 Taejong dismissed Yi Mu from the post of vice-premier. Before the end of the same month Taejong had occasion to highlight Yi's guilt. When Taejong announced his intention to abdicate the throne the next month, he reaffirmed and consolidated government control of

military power. On early September 1409 Taejong brought out again his suspicion that the Min brothers had sought to assassinate all of his sons except the Crown Prince. This incident gave birth to a major criminal case, in which Yi Mu was impeached by a censor for committing six types of crimes. Yi was subsequently imprisoned. On the first day of the next month Taejong personally supervised the inquiry into Yi's crimes, which went through due process at least nominally. Yi was found guilty and was then exiled to a remote place two days later. Two days later again he was murdered on his way to the place of exile by assassins sent by the king.

King Taejong had long made a point of precluding high-ranking officials from having a voice in military affairs by means of a series of reform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 measure was obviously designe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political for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ssassination of Yi Mu by Taejong is to be taken as a punishment inflicted upon a government official for a failure to direct his loyalty exclusively toward the king.

**Key words** : King Taejong, Yi Mu, military power, vice-premier, merit subject, consort clan, Min Mu-gu and his brothers.